

제2817호
2021. 4. 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23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조례공포]

제155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155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95
제15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제155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104
제155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107
제15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110
제15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113
제155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116
제15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119
제15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3
제15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126
제156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128
제156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239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점제도 개선사항과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점 운영기준 개선에 따른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변경기준 반영(안 별표16, 별표17)

- 1) 자격증 가점 : 평정점 축소(최대 0.5점→0.24점), 대상 자격증 20종 추가
- 2) 외국어 가점 : 인정기준 상향, 평정점 하향(최대 0.25점→0.12점), 가점단계 축소(3단계→2단계)

나. 기관별 인사담당관 지정 관련 의회 인사담당관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간 겸임기준 보완 정비
(안 제28조, 별표14)

라. 상위 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 사항 반영

- 1)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대상 추가(안 제5조)
- 2)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규정 정비 및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범위 명확화(안 제8조)
- 3) 시험위원 민간위원 위촉 관련 단서조항 신설(안 제13조)
- 4) 신규임용시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특전 폐지(안 제16조, 별표 7의2)
- 5)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7조 및 별표 5의4)
- 6)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서식 명확화(안 제33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 7)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군복무기간 및 군복무대체기간 산입기준 명시 (안 제34조)
- 8)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직 표시 삭제 (안 별표13)
- 9) 신규임용, 전직 등 관련 응시자격·가산·면제 자격증 기준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방역직류 시험자격 요건 신설
 - 방재안전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기능사 자격증 삭제
 - 기타 인사규칙표준안에 의거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등 정비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직위명 정비
- 면접시험평정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정비
-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
- 법령 띄어쓰기 및 표기,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조(종전의 제2호) 중 “건강도시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제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에서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제8조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을 “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같다.”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담당관·실과별로”를 “담당관·과별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8의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를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 제목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을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진임용순위명부는”을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에”를 “제23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를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5의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및 별표 17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u>보건의료정보관리사</u> ,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u>보건의료정보관리사</u> ,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u>보건의료정보관리사</u> ,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u>정보처리</u>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u>정보보안</u>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기능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기능장: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 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 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 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u>방수</u> ,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 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렌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시 설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직렬\계급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	서	사	서	사	서	사
공	업	일반전기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일반기계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 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 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환 경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 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 신설 <2021.4.3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안전, 교통)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 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업	직류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술사(화공안전, 가스)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항 공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시 설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	설		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측,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도시계획, 조경)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건축, 조경)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 삭제 <2021.4.30.>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렌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다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송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u>건설기계정비</u>,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송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u>철도차량정비</u>, <u>철도운송</u>,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u>불도저</u>운전, 천장크레인운전, <u>로더</u>운전, <u>롤러</u>운전, <u>모터</u>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산비율: 철도교통 안전관리 자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개인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능사 :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 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 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u>식품가공</u> ,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u>토양환경</u> , 산림, 생 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 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 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 의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 인공수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영양사,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응급구조사1 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 율 적용:간호사, 조산 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 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u>해양환경</u> , 산업위 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위생 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 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하 다), <u>정수시설운영관 리사 1급</u> 산업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u>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u> <u>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 리사 3급</u>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 산비율 적용 : 위생 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가 산비율 적용 : 위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u>에너지관리</u> ,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u>방수</u> ,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직 렌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 건축사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송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송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화 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공 ,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농촌지도	작 물 농 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원 예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잠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식품, 생물공학, 유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 ,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 급, 사회조사분석사 1 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육 사 2급, 사회조사분석 사 2급, 영양사, 위생 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청소년지 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 사 ,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 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 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 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 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 자동화 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 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 진동,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 사,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 식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의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가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u>인간공학</u>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 상병리사, <u>보건 정보관리사</u>,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u>화공</u>,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u>화공</u>, 조경, <u>산림</u>,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u>화공</u>, 조경, 산림, <u>농림토양평가관리</u>,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 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 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u>광해방지</u>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4조제2항 관련)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 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 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19-25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 수	교 수 부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u>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 업·지방공사·지방공단</u>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5조제1항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 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귀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탈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상,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공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즈,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야생,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해양 (선박)	수산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선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u>한의사</u> ,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간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간강간호사2급)
보	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시 (토목, 토목) 설 수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건축) 설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지적) 설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측지) 설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교통) 설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오물처리사2급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 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 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 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 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 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 조)
선풍기 운영 선풍기 관리 운영		기술사(선풍기설계, 선풍기건조, 선풍기계, 기 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 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 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 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 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 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 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 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 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주 :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복지자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등 주민센터(**동정부복지팀**)”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2. 연구사

직렬	계급	연구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작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인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인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17]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Ⅲ이상	ⅢM3이상 ⅢM미만
	G-TO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 1인 이상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1인 이상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등록 번호		제 회 번		④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③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인	인
② 생년월일							
⑤ 주 소						(사진부착)	
⑥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⑦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⑧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⑨ 자 격 면 허				⑩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⑪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⑫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④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⑤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⑥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⑦ 병 역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⑧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한다.
- ⑨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 ⑩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한다.
- ⑪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한다.
- ⑫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4.30.>](#)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 속	성 명	총 평 정 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 : 총무과장 2. 보건소 : 건강도시과장 3. 동 주민센터 : 동장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 : <u>행정지원과장</u> 2. <u>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u> 3. <u>보건소 : 보건위생과장</u> 4. <u>동 주민센터 : 동장</u>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현행	개정
<u>른 특별승진임용</u> <u>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u> <u>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u>	<u>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u> <u>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u> <u>8.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u>
제8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 ----- ----- 3.----- ----- 3일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u>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

현행	개정
	제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 ----- -----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	③ <삭제>

현행	개정
<u>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의</u>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 <u>제2항의</u> ----- -----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u>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②~⑦ (생략)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u>같다.</u> ⑨ (생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 ----- <u>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u>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②~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u>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u>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u>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u>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 ----- ----- ----- <u>「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u> ----- -----

현행	개정
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 부서 배치는 본청은 <u>담당관·실·과별</u> <u>로</u> , 의회사무과,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 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u>발령한다</u> . ② <u>담당관·실장·과장</u> 및 동장은 제1항 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 한다. ③ (생략)	제26조(근무부서 배치) ① ----- ----- <u>담당관·과별</u> <u>로</u> , ----- ----- -----. ② <u>담당관·과장</u>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u>〈신 설〉</u>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 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 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과</u> <u>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u> <u>방공단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u> <u>별표 8의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u> <u>력기준표를 준용할 수 있다.</u>
제3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 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u>승진임용순위명부</u> 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	제33조(<u>5급에의</u>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 <u>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u> <u>호 서식에 따라</u> ----- ----- -----

현	행	개	정
위에 따른다.		-----.	
제3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제3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 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 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 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 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 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 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 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 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증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 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 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 점은 별표 16과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 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7과 같다.		제35조(자격증가점) ① 「----- ----- 제 23조제2항에 ----- ----- -----.	
		②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7과 같다.	

현		행		개		정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의료 기술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문 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 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의 생사,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 2. (생략)				1. ~ 2. (생략)			
3.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 6. (생략)				4. ~ 6. (생략)			

현행			개정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전산	전산	기술사(생략)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산	전산	기술사(현행과 같음)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시설	농업 토목	기술사(생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생략)	시설	농업 토목	기술사(현행과 같음)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현행과 같음)								
시설	건축	기술사(생략) 기능장(생략) 기사(생략)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생략)	시설	건축	기술사(현행과 같음) 기능장(현행과 같음) 기사(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현행과 같음)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직렬\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기업	(생략)	공인회계사	(생략)			행정	기업	(현행과 같음)	공인회계사	(현행과 같음)		
	행정		감정평가사(3)					행정		감정평가사(3)			
			세무사(3)							세무사(3)			
	운수		물류관리사(9)	물류관리사(6)	물류관리사(6)	물류관리사		운수		물류관리사(9)	물류관리사(6)	물류관리사(6)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
			리사(9)	리사(6)	리사(6)	리사				리자(9)	리자(6)	리자(6)	리자
보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보건	방역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간호사	
									한의사(2)	약사(3)	약사		
									수의사(7)	간호사(6)	간호사(3)		
									약사(7)				
									간호사(12)				
의료	의료	(생략)	임상병리사(8)	임상병리사(5)	임상병리사(2)	임상병리사	의료	의료	(현행과 같음)	임상병리사(8)	임상병리사(5)	임상병리사(2)	임상병리사
기술	기술		의무기록사(8)	의무기록사(5)	의무기록사(2)	의무기록사	기술	기술		보건의료정보관	보건의료정보관	보건의료정보관	보건의료정보관

현행

개정

계급

직렬

5급

6급

7급

8급

9급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표준감독자

임상심리사(3)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3)

임상심리사(3)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2)급

환경

일반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표준감독자

임상심리사(3)

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3)

임상심리사(3)

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2)급

환경

일반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

정수시설운영관

리사(2)급

리사(3)급

〈신 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		행		개		정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자 격 기 준			
		종류		임용 등급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업	일반	(생략)		(생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						
	농업						
	기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업	일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						
	농업						
	기계						

현행				개정					
직렬\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계 운전	(생략)	(생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 운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생략)	(생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업	일반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생략)	(생략)	공업	일반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녹지	산림 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녹지	산림 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보건	보건	(생략)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	(생략)	보건	보건	(현행과 같음)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직렬	직류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신 설>			<신 설>	<신 설>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의료	의료	(생 략)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생 략)	의료	의료	(현행과 같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현행과 같음)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시설	건축	(생 략)		(생 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건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삭 제>

현행				개정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6조 관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술 사: (생략) 기능 장: (생략) 기 사: (생략)		공업	일반 기계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농업 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 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기계 운전	기술 사: (생략) 기능 장: (생략) 기 사: (생략) 산업기사: (생략) 기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정비, 객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업	기계 운전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원자 력	기술 사: (생략) 기 사: (생략) 산업기사: 열관리	(생략)		원자 력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현행과 같음)
농업	일반 농업	기술 사: (생략) 기 사: (생략) 산업기사: (생략) 기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략)	농업	일반 농업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현행과 같음)
	식물 검역	기술 사: (생략)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과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생략) 기능 사: (생략)			식물 검역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 사: (현행과 같음)	
해양 수산	일반 수산	기술 사: (생략) 기 사: (생략)	〈신설〉	해양 수산	일반 수산	기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술사: (생략) 기사: (생략)			수산제조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식품가공	
	어로	기술사: (생략)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물관리 산업기사: (생략)			어로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물관리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생략) 기능장: (생략) 기사: (생략)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가,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시 기능사: (생략)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가,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시 기능사: (현행과 같음)	
보건	<신설>		<신설>	보건	방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생략) 기사: (생략)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생략)	(생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의료기술	의료기술 (현행과 같음)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조기기사
환경	일반 환경	기 술 사: (생 략) 기 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생 략) 기 능 사: (생 략)	(생 략)	환경	일반 환경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	수질	(생 략)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환경	수질	(현행과 같음)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환경	폐기물	기 술 사: (생 략) 기 능 장: (생 략) 기 사: (생 략)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생 략)	(생 략)	환경	폐기물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설	건축	기 술 사: (생 략) 기 능 장: (생 략) 기 사: (생 략)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생 략)	(생 략)	시설	건축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나. 연구·지도직				나. 연구·지도직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생략)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관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키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관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삭제>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 술 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키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관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삭제>	
공업연구	전기	기 술 사: (생략) 기 능 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삭제>	
전자	전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전자기기 기 사: (생략)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		전자	전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회로설계, 디지털체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품질경영 기 능 사: <u>〈삭 제〉</u>	
	금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u>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u> 기 능 장: (생 략) 기 사: (생 략) 산업기사: (생 략)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u>금속제련</u>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사: <u>〈삭 제〉</u>	
	섬유	기 술 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생 략) 기 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직기조직,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섬유	기 술 사: <u>섬유</u> ,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현행과 같음) 기 사: <u>섬유</u>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u>섬유</u> ,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u>〈삭 제〉</u>	
	화학	기 술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u>위험물관리, 가스</u> 기 사: <u>공업화학</u>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u>공업화학</u> ,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학	기 술 사: <u>화공</u> ,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u>위험물, 가스</u>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u>화공</u> , 화약류제조, 세라믹, <u>위험물</u>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u>〈삭 제〉</u>	
	산업경영	기 술 사: (생 략) 기 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u>공정관리</u> ,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u>공정관리</u> , 품질관리, 포장			산업경영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u>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u>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u>품질경영</u> , 포장	
	물리	기 술 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계량물리, 전자, <u>열관리</u>			물리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전자, 원자력, <u>에너지관리</u> , 광학 산업기사: <u>정밀측정</u> , 전자, <u>에너지관리</u>	
농업연구	작물	기 술 사: (생 략)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u>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u> 산업기사: (생 략)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	작물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삭 제〉</u>
농촌지도	농업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업	기 능 사: <u>〈삭 제〉</u>	
농업원예	원예	기 술 사: (생 략)		농업원예	원예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연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u>농화학</u> , <u>농림토양평가 관리</u> , 조정,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연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정,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예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조정,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예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조정,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u>버섯종균</u> , <u>채소재배</u> , <u>과수재배</u> , <u>원예</u> , <u>화훼장식</u> , 식물보호, <u>농산식품가공</u> , 유기농업				기 능 사: <u>(삭제)</u>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생략)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u>농화학</u> ,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식품, 생물공학,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u>토양환경</u> , 식품, 생물공학,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생사 기 사: 생물공학			잠업곤충	기 사: 생물공학	
농촌지도	잠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생략)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농화학</u> , <u>농림토양평가관리</u> ,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u>토양환경</u> ,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생략)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u>버섯종균</u> , <u>채소재배</u> , <u>과수재배</u> , <u>원예</u> , 식물보호, <u>농산식품가공</u> , 유기농업, <u>화훼장식</u>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 능 사: <u>(삭제)</u>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 술 사: <u>염색가공</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u>토목</u>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 술 사: <u>섬유</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u>농어업토목</u>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u>섬유물리</u> , <u>섬유화학</u> , <u>염색가공</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u>토목</u> ,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생략)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u>섬유</u> ,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u>토목</u> ,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현행과 같음)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u>섬유가공</u> , <u>섬유물리</u> , <u>섬유화학</u> ,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u>섬유</u> ,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업연구	농공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u>기계공정설계</u> , 용접, 금형, <u>비철아연비파괴검사</u> ,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농공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u>비파괴검사</u> ,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u>열관리</u> ,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u>자동차검사</u> ,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략)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u>에너지관리</u> ,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u>자동차정비</u> ,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u>메카트로닉스</u>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u>계량기계</u> , <u>계량전기</u> , <u>계량물리</u>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u>열관리</u> ,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u>자동차검사</u> ,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u>정밀측정</u>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u>에너지관리</u> ,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 (생략) 기사: (생략)	(생략)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촌지도	축산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농촌지도	축산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u>〈삭제〉</u>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입산가공, 농화학 기술장: (생략) 기사: (생략)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술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농촌지도	임업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	임업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u>〈삭제〉</u>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 (생략)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u>어업생물관리</u>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산업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산업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촌	기능사: 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촌	기능사: <u>〈삭제〉</u>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생략) 기사: 수산양식, <u>어병</u> ,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u>〈삭제〉</u>	
	수산공학	기술사: (생략)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u>해양생물관리</u> , <u>어로</u> ,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u>어로</u>		해양수산연구	수산공학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u>어업생물관리</u> , <u>수산양식</u> , 수질환경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u>〈삭제〉</u>	
	수산가공	기술사: (생략) 기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수산가공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수산제조, <u>수산양식</u> ,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식품 기능사: <u>〈삭제〉</u>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생략)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u>인간공학</u>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u>〈삭제〉</u>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u>보건의료정보관리사</u> ,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

현행				개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생략) 기사: 공업화학,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정,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생략)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삭제)	(현행과 같음)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생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철도토목,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삭제)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생략) 기사: (생략)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삭제)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생략) 기능장: (생략) 기사: (생략) 산업기사: (생략) 기능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캐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삭제)	

현행							개정						
〔별표 13〕 공무원경력 ¹⁾ 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13〕 공무원경력 ¹⁾ 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상당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 경찰공무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일반직 ... 경찰공무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 판사,검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군인 ... 판사,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인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인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 상)	전임강사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 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사 (3년이 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의원 (3년이 상)		평의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사 (3년이 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의원 (3년이 상)		평의원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5조제1항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업 (기계)	(생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	공업	(현행과 같음)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

현행				개정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생 략)	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제도장비정비) 기능장(현행과 같음)	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제품장착(SMT))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비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생 략)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비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현행과 같음)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 (생 략)		(생 략)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보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측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현

행

개

정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간호		간호사, 조산사	
시설 (토목, 수도토목)	(생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주 :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동 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u>0.5</u>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u>0.25</u>

〈신설〉

〔별표 17〕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1)	0.05점2)	
영 어	TOEFL	CBT	197점이상	183점이상 197점미만	163점이상 183점미만
			IBT	71점이상	65점이상 71점미만
	TOEIC		700점이상	640점이상 700점미만	595점이상 640점미만
		TEPS	625점이상	512점이상 625점미만	472점이상 512점미만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간호		간호사, 조산사, <u>사회복지사1급</u> , <u>정신보건전문요원</u> (<u>정신보건간호사1급</u> , <u>정신건강간호사1급</u>)	<u>사회복지사2급</u> , <u>정신보건전문요원</u> (<u>정신보건간호사2급</u> , <u>정신건강간호사2급</u>)
시설 (토목, 수도토목)	(현행과 같음)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u>콘크리트</u>)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u>콘크리트</u>)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u>오물처리사1급</u>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u>오물처리사2급</u>

주 :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동 주민센터(동정부복지팀)”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u>0.24</u>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u>0.12</u>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17〕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5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u>0.12점</u>	<u>0.05점</u>
영 어	<u>TOEFL(IBT)</u>	<u>105점이상</u>	<u>91점이상 105점미만</u>
	TOEIC	<u>900점이상</u>	<u>800점이상 900점미만</u>
	<u>청각장애</u>	<u>450점이상</u>	<u>400점이상 450점미만</u>
	<u>TEPS</u>	<u>467점이상</u>	<u>390점이상 467점미만</u>
	<u>청각장애</u>	<u>280점이상</u>	<u>234점이상 280점미만</u>
	<u>TOSEL (ADVANCED)</u>	<u>830점이상</u>	<u>740점이상 830점미만</u>

현행					개정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25점	0.15점1)	0.05점2)			0.12점	0.05점	
	TOSEL (ADVANCED)	565점이상	483점이상 565점미만	373점이상 483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이상	55점이상 60점미만	51점이상 55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주 : 1. 1) 및 2)의 가점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획득한 성적부터 평정함

2. (생략)

<신설>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검 제 정 용 란	(제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주인등록번호	직별(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	---	-------------------------------------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다.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보통 미흡
다.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 5명은 같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검 제 정 용 란	(제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직별(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	---	-------------------------------------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다.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수 보통 미흡
다.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당확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 5명은 같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현행	개정																																																																																																																																																																																																																																																										
[별지 제2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필기</td> <td style="width: 40%;">(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td> <td style="width: 10%;">직렬(류)</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검재</td> <td>본인필적 :</td> <td>응시번호</td> <td></td> </tr> <tr> <td>정용</td> <td></td> <td>성명</td> <td>(한글)</td> </tr> <tr> <td>란</td> <td></td> <td></td> <td>(한자)</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5%;">평정요소</th> <th colspan="3">위원평정</th> </tr> <tr> <th></th> <th>상</th> <th>중</th> <th>하</th> </tr> <tr> <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개</td> <td>개</td> <td>개</td> </tr> <tr> <td>위원서명</td> <td colspan="3">성명 (서명)</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판정</td> <td style="width: 10%;">합격</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td> <td>불합격</td> <td></td> </tr> <tr> <td></td> <td></td> <td>담당확인</td> <td></td> <td></td> </tr> </table>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작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검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별지 제2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필기</td> <td style="width: 40%;">(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td> <td style="width: 10%;">직렬(류)</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검재</td> <td>본인필적 :</td> <td>응시번호</td> <td></td> </tr> <tr> <td>정용</td> <td></td> <td>성명</td> <td>(한글)</td> </tr> <tr> <td>란</td> <td></td> <td></td> <td>(한자)</td> </tr> <tr> <td>생년월일</td> <td></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5%;">평정요소</th> <th colspan="3">위원평정</th> </tr> <tr> <th></th> <th>상</th> <th>중</th> <th>하</th> </tr> <tr> <td>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 <td></td> <td></td> <td></td> </tr> <tr> <td>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개</td> <td>개</td> <td>개</td> </tr> <tr> <td>위원서명</td> <td colspan="3">성명 (서명)</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판정</td> <td style="width: 10%;">합격</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td> <td></td> <td></td> <td>불합격</td> <td></td> </tr> <tr> <td></td> <td></td> <td>담당확인</td> <td></td> <td></td> </tr> </table>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작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검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생년월일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검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필기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검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용		성명	(한글)																																																																																																																																																																																																																																																								
란			(한자)																																																																																																																																																																																																																																																								
생년월일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원서명	성명 (서명)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		판정	합격																																																																																																																																																																																																																																																								
타 위원에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확인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별지 제3호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0%;">제회면</td> <td style="width: 10%;">직</td> <td style="width: 10%;">⑤응시연도 및 회수</td> <td style="width: 10%;">()년도제회</td> </tr> <tr> <td>응급</td> <td></td> <td></td> <td>응시지구(기회)</td> <td>지구</td> </tr> <tr> <td></td> <td></td> <td></td> <td>응시번호</td> <td>면</td> </tr> <tr> <td>①성명 (원본)</td> <td>②생년월일 (세)</td> <td>③성별</td> <td>④희망지역 제1지역</td> <td>응등록인사</td> </tr> <tr> <td></td> <td></td> <td>남 □ 여 □</td> <td>시군</td> <td>사전대조</td> </tr> <tr> <td></td> <td></td> <td></td> <td>제2지역</td> <td>서류인사</td> </tr> <tr> <td></td> <td></td> <td></td> <td>시군</td> <td>⑤</td> </tr> <tr> <td>⑥연주소</td> <td colspan="4">(사전부착)</td> </tr> <tr> <td>⑦별역</td> <td>필</td> <td>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비필사유</td> <td>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⑧학 력</td> </tr> <tr> <td>부터</td> <td>까지</td> <td>학 력</td> <td colspan="2">전공부분.과목</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⑨자 격 면 회</td> </tr> <tr> <td>연월일</td> <td>종</td> <td>별</td> <td>연월일</td> <td>사</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랑</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⑩특 기</td> <td>⑪위 비</td> <td>⑫운 동</td> <td colspan="2">⑬종 교</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⑭경 력</td> </tr> <tr> <td>부터</td> <td>까지</td> <td>경 력 사 랑</td> <td colspan="2">발령장</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able>	등록번호	제회면	직	⑤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응급			응시지구(기회)	지구				응시번호	면	①성명 (원본)	②생년월일 (세)	③성별	④희망지역 제1지역	응등록인사			남 □ 여 □	시군	사전대조				제2지역	서류인사				시군	⑤	⑥연주소	(사전부착)				⑦별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비필사유	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			⑧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분.과목												⑨자 격 면 회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랑						⑩특 기	⑪위 비	⑫운 동	⑬종 교							⑭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랑	발령장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별지 제3호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등록번호</td> <td style="width: 10%;">제회면</td> <td style="width: 10%;">직</td> <td style="width: 10%;">④응시연도 및 회수</td> <td style="width: 10%;">()년도제회</td> </tr> <tr> <td>응급</td> <td></td> <td></td> <td>응시지구(기회)</td> <td>지구</td> </tr> <tr> <td></td> <td></td> <td></td> <td>응시번호</td> <td>면</td> </tr> <tr> <td>①성명 (원본)</td> <td>②생년월일 (세)</td> <td>③성별</td> <td>④희망지역 제1지역</td> <td>응등록인사</td> </tr> <tr> <td></td> <td></td> <td>남 □ 여 □</td> <td>시군</td> <td>사전대조</td> </tr> <tr> <td></td> <td></td> <td></td> <td>제2지역</td> <td>서류인사</td> </tr> <tr> <td></td> <td></td> <td></td> <td>시군</td> <td>⑤</td> </tr> <tr> <td>⑥연주소</td> <td colspan="4">(사전부착)</td> </tr> <tr> <td>⑦별역</td> <td>필</td> <td>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비필사유</td> <td>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⑧학 력</td> </tr> <tr> <td>부터</td> <td>까지</td> <td>학 력</td> <td colspan="2">전공부분.과목</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⑨자 격 면 회</td> </tr> <tr> <td>연월일</td> <td>종</td> <td>별</td> <td>연월일</td> <td>사</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랑</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⑩특 기</td> <td>⑪위 비</td> <td>⑫운 동</td> <td colspan="2">⑬종 교</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⑭경 력</td> </tr> <tr> <td>부터</td> <td>까지</td> <td>경 력 사 랑</td> <td colspan="2">발령장</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able>	등록번호	제회면	직	④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응급			응시지구(기회)	지구				응시번호	면	①성명 (원본)	②생년월일 (세)	③성별	④희망지역 제1지역	응등록인사			남 □ 여 □	시군	사전대조				제2지역	서류인사				시군	⑤	⑥연주소	(사전부착)				⑦별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비필사유	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			⑧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분.과목												⑨자 격 면 회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랑						⑩특 기	⑪위 비	⑫운 동	⑬종 교							⑭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랑	발령장																
등록번호	제회면	직	⑤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응급			응시지구(기회)	지구																																																																																																																																																																																																																																																							
			응시번호	면																																																																																																																																																																																																																																																							
①성명 (원본)	②생년월일 (세)	③성별	④희망지역 제1지역	응등록인사																																																																																																																																																																																																																																																							
		남 □ 여 □	시군	사전대조																																																																																																																																																																																																																																																							
			제2지역	서류인사																																																																																																																																																																																																																																																							
			시군	⑤																																																																																																																																																																																																																																																							
⑥연주소	(사전부착)																																																																																																																																																																																																																																																										
⑦별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비필사유	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																																																																																																																																																																																																																																																									
⑧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분.과목																																																																																																																																																																																																																																																								
⑨자 격 면 회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랑																																																																																																																																																																																																																																																							
⑩특 기	⑪위 비	⑫운 동	⑬종 교																																																																																																																																																																																																																																																								
⑭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랑	발령장																																																																																																																																																																																																																																																								
등록번호	제회면	직	④응시연도 및 회수	()년도제회																																																																																																																																																																																																																																																							
응급			응시지구(기회)	지구																																																																																																																																																																																																																																																							
			응시번호	면																																																																																																																																																																																																																																																							
①성명 (원본)	②생년월일 (세)	③성별	④희망지역 제1지역	응등록인사																																																																																																																																																																																																																																																							
		남 □ 여 □	시군	사전대조																																																																																																																																																																																																																																																							
			제2지역	서류인사																																																																																																																																																																																																																																																							
			시군	⑤																																																																																																																																																																																																																																																							
⑥연주소	(사전부착)																																																																																																																																																																																																																																																										
⑦별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비필사유	입대연월일 . . . 계대연월일 . . .																																																																																																																																																																																																																																																									
⑧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분.과목																																																																																																																																																																																																																																																								
⑨자 격 면 회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랑																																																																																																																																																																																																																																																							
⑩특 기	⑪위 비	⑫운 동	⑬종 교																																																																																																																																																																																																																																																								
⑭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랑	발령장																																																																																																																																																																																																																																																								

현행	개정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㉑ 재산상황 가. 부동산(평) 나. 동 산(원) ㉒ 보증인 또는 후원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15%;">성명</th> <th style="width: 15%;">직업</th> <th style="width: 70%;">연주소</th> </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㉓ 가족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15%;">본인과의 관계</th>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10%;">성별</th> <th style="width: 10%;">연령</th> <th style="width: 10%;">직업</th> <th style="width: 10%;">최종학력</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첨부서류</th> <th style="width: 15%;">호적초본</th> <th style="width: 15%;">신원증명원</th> <th style="width: 15%;">학력증명서</th> <th style="width: 15%;">병적증명서</th> <th style="width: 20%;">신원진술서</th> </tr> <tr> <td>동수</td> <td>동</td> <td>동</td> <td>동</td> <td>동</td> <td>동</td> </tr> </table>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㉔ 우무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성명	직업	연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호적초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동수	동	동	동	동	동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㉒ 비상연락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33%;">관계</th> <th style="width: 33%;">성명</th> <th style="width: 33%;">연락처</th> </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람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관계	성명	연락처									
성명	직업	연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호적초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동수	동	동	동	동	동																																																																																																						
관계	성명	연락처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성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④ 희망지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⑤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⑥ 주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⑦ 병역 … 미필란에는 연평미필,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증,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⑧ 학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⑨ 자격, 면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⑩ 상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⑪ 경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⑫ 재산상황 … 부동산은 가옥, 입야, 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⑬ 가족사항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⑭ 우무인 … 오른쪽무인(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 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제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처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면지 및 통, 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주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희망지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④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⑤ 주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⑥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⑦ 병역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⑧ 학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한다. ⑨ 자격, 면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한다. ⑩ 상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한다. ⑪ 경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한다. ⑫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한다.																																																																																																										

현행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 급</th> <th>직 별</th> <th>추천인원수</th> <th>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th> <th>비 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직 인 (발 신 기 관 명) 1. 임용자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등록번호</th> <th>성명</th> <th>임 용 연 월 일</th> <th>임 용 직 급</th> <th>임 용 직 위</th> <th>비 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568mm (신 권-4)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등록번호</th> <th>성 명</th> <th>임 용 불 응 사 유</th> </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계 급	직 별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 급</th> <th>직 별</th> <th>추천인원수</th> <th>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th> <th>비 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직 인 (발 신 기 관 명) 1. 임용자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등록번호</th> <th>성명</th> <th>임 용 연 월 일</th> <th>임 용 직 급</th> <th>임 용 직 위</th> <th>비 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2. 임용불응자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등록번호</th> <th>성 명</th> <th>임 용 불 응 사 유</th> </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계 급	직 별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계 급	직 별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계 급	직 별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별지 제8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3">순 위</th><th rowspan="2">소 속</th><th rowspan="2">성 명</th><th rowspan="2">총 평 점</th><th colspan="3">점수산출내역</th></tr> <tr> <th>최초</th><th>조정</th><th>조정</th><th>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th><th>시험성적</th><th>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th></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점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 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순 위			소 속	성 명	총 평 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순 위			소 속	성 명				총 평 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조례공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이상 5명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검사위원수”를 “검사위원 수”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은”으로, “자를 선임한다”를 “사람을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를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로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제1항 중 “검사위원중”을 “검사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결산심의시”를 “결산심의 시”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지연등”을 “지연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촉하여야 한다”를 “해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제9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제2항 본문 중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를 “의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일때”를 “폐회중일 때”로, “차기”를 “다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제개)”를 “(감사위원의 제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3명이상 5명이하</u> 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u>3명 이</u> <u>상</u> ----- <u>5명</u> ----- <u>이하</u> ----- <u>검사</u> <u>위원 수</u>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생 략) ②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④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다</u>) 이외의 검사위원은 ----- ----- <u>사람을</u>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 <u>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u>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중에서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 <u>검사위</u> <u>원</u> ----- <u>중</u>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①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생략) 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①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 제9조(감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감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① ----- ----- ----- 기일 내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 결산심의 시 ----- -----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연 등-- ----- -----. 제8조(실비변상) ① ----- ----- 범위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위원의 해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임할 수 있다. 이

현행	개정안
한다. <후단 신설> 1. 서울특별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증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검사위원의 제개) 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생략)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삭제> ② 의장은 ----- ----- 폐회 중일 때----- ----- 다음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발굴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 나.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사항을 변경함(제9조제1항).
- 다. 그 밖에 오탈자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등에 따라 정비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명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 사 · 형 사 소 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 기준)	
	나. 환송심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4.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 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제1조 ~ 제2조).
- 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에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제8조).
- 라.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4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제3조).
- 나.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제4조).
- 다. 정산 보고에 대하여 규정(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5호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개정이유**

가. 우리 구는 조선 600여년의 수도이자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유산들이 존재하는 서울의 중심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물질만능주의의 현대 문화가 확산되고,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잊혀지거나 그 가치가 단절될 위기에 있음.

나. 이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제4조).

다.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6호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 및 관광객들의 채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채식 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개인이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채식 실천 기반 조성

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

4.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채식 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 및 관광객들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

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 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채식메뉴를 개발하여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을 채식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④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채식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채식의 실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 선택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관내 음식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채식에 대한 담론은 오래 전부터 종교적 차원에서 존재해왔지만, 오늘날에는 종교 외의 개인의 취향, 건강, 환경보호, 미용 등 여러 이유에 근거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채식 인구도 2019년 기준 150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채식주의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나. 특히, 우리 구는 외부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다. 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라. 채식 실천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7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기준 규정(제5조)
- 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위탁사업기준 규정(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8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경연, 전시 등의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사업과 청소년활동을 권장하고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다.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9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서 법 제3조제1호의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적용한다.

-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소아동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퇴소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

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아동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자립 능력의 유무나 자립 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나. 이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거나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 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나.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다. 퇴소아동 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 마.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지원대상은 현재 서울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함(제4조)

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함(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1호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금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제4조)
- 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청장의 홍보의무를 규정함(제5조)
- 마. 협조요청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2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 시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구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우대조치) 구청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 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노인 취업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한 노인채용 우대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홍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 등의 내용 조문 개정(제3조제3항)
- 나. 기존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권장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용 조문 개정(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산부”를 “임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고위험 임산부의”를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로, “거주중”을 “거주 중”으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를 “구”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로, “경과해야”를 “지나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구 관내”를 “구”로, “거주중”을 “거주 중”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생신고시”를 “출생신고 시”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부 및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 ----- 임신부 ----- -----.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범위 내에서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준) ① ----- 범위 -----. ② ----- ----- 범위-- -----.
제3조의2(고위험 임신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제3조의2(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 ②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③ 다만, 제1항, 제2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산축하용품의 용도에 따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임신부와 출생신고를 한 모든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대상자는 중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② ----- 구 -----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 지나 야 -----. ③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 -. ④ ----- 구 ----- 거주 중 ----- -----. 제6조(지원신청) ① ----- ----- ----- ----- ----- ----- ----- <후단 삭제> ----- ----- -----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7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등 비치)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 시 -----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①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단 음 달 5일까지 구청장----- -----. ③ ----- 지원 여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출생신고 시 -----. 제9조(대장 등 비치) ----- 별지 ----- 제2호서식을,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개정이유**

- 고위험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의 신청대상 및 신청거주기간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와 출산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서비스 수혜대상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임산부’를 ‘임신부’로 변경함(제1조).
- 서비스 신청대상을 ‘고위험임신부’에서 ‘임신부’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제3조의2).
- 지원기준 명확히 하기 위해 1일 4시간, 최대 5회 지원 규정 명시(제3조의2).
- 그 밖에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체계상 미비한 내용 등을 정비함.